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50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김기표·신영대·위성곤

강득구 • 서영교 • 백혜련

김 윤・전재수・이연희

소병훈 • 권칠승 • 김성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열흘 동안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주민 3만 7,000명이 대피하며,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산림면적 4만 8천여ha가 파괴됨. 정부는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경남 산청군·하동군·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 요금도 상당히 부담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할 수 있는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6호 중 "전기요금 등의"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③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6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	
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u>전</u>	<u>전</u>
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

유예 등의 간접지원 7. ~ 9. (생 략)

④ ~ ⑦ (생 략)

<u> 방요금 등의</u>-----

7.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